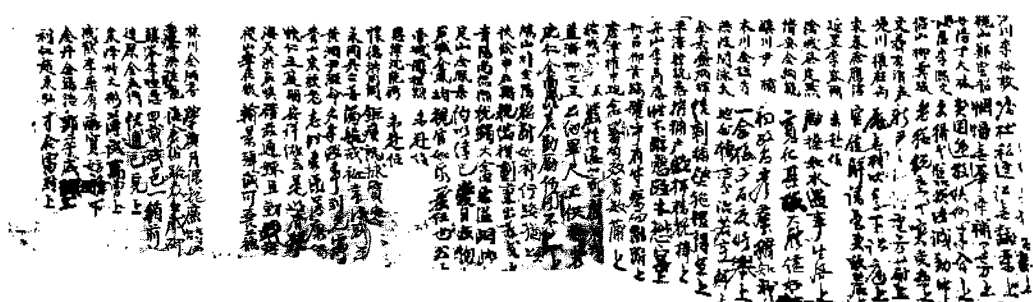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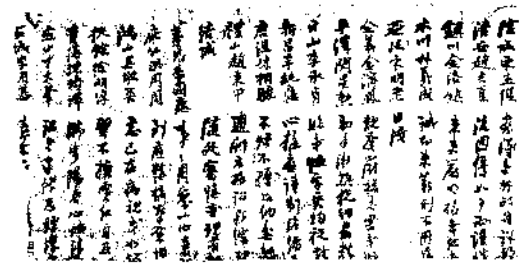


▲ 충청도관찰사가 관내 수령의 인사고과 성적을 기록한 포평목 1825년



▲ 조선후기 포평목



▲ 조선후기 포평목

포평목 (褒貶目)

조선시대 수령들도 지금의 인사고과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차례씩 근무 성적을 평가받았는데, 이를 포평(褒貶)이라 한다. 포평목은 그 성적을 기록한 근무평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,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관리의 승진과 강등, 때로는 파직이 결정되었다.

수령의 업무는 '칠사(七事)'라는 이름으로 『경국대전』에 “農桑盛, 戶口增, 學校興, 軍政修, 賦役均, 詞訟簡, 奸猾息”의 7개항으로 법제화하였는데, 관찰사는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선(善)·최(最)·악(惡)·전(殿)으로 구분하여 평정하였다.

관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수령 등의 근무성적을 작성하여 보고하였고, 그 결과는 임금이 열람한 후 이조(吏曹)에 보내지고, 이조의 고공사(考功司)에서 수합하여 보관하다가 고과성적에 반영하였다. 포평의 성적은 일반적으로 상·중·하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처분이 정해져 있었는데, 특히 하(下)를 받은 수령은 즉시 파직되었을 뿐만 아니라, 2년 동안은 벼슬에 나갈 수 없도록 하였다.

<제공 : 충남역사박물관>